

의안번호	제 158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5월 일 (제 300 회)

**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박종성 의원 외 6인
발의연월일	2011년 5월 2일

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1년 5월 2일

발 의 자 : 박종성 의원

최병윤·김영주·김양희
정지숙·유완백·이광진의원

1. 개정이유

- 도립예술단 창단 후 운영과정에서 노출된 제반 문제를 감안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
→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

나. 명칭변경

- 충청북도립챔버오케스트라 → 교향악단

다. 예술단 규모 확대

- 단원 30명 → 42명
- 사무국직원 2명 → 규칙으로 정함.

라. 예술단 업무분장 구분

- 예술감독겸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의 기량연마와 연주를 지휘한다.(신설)
- 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며 연주기획, 홍보, 마케팅, 단원관리, 서무 등 제반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한다.(신설)

마. 문구정비

- 예술단 → 도립교향악단
- 챔버오케스트라 → 교향악단
- 상임단원 →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

바. 운영자문화 운영 현실화

- 명 칭 : 운영자문화 → 운영자문위원회
- 회 장 : 문화여성환경국장 → 위원장 단장(행정부지사)
- 부회장 : 예술감독 → 부위원장 문화여성환경국장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관련부서 의견수렴 : 의견수렴 과정 거침

다. 입법예고 : 해당없음.

라. 예산조치 : 예산조치사항 없음.

마.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바. 부패영향평가 : 이견 없음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”를 “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충청북도립예술단”을 “충청북도립교향악단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충청북도립예술단(이하 “예술단”이라 한다)”을 “충청북도립교향악단(이하 “도립교향악단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예술단”을 “도립교향악단”으로, “충청북도립챔버오케스트라와”를 “교향악단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교향악단의 구성원(이하 “단원”이라 한다)은 42명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예술단”을 각각 “도립교향악단”으로, “통할”을 “총괄”로, “직원”을 “사무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예술감독겸 지휘자(이하 “예술감독”이라 한다)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의 기량연마와 연주를 지휘 한다.

④ 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며 연주기획, 홍보, 마케팅, 단원관리, 서무 등 제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예술단”을 “도립교향악단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상임단원”을 “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을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상임단원”을 “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중 “상임단원”을 “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제5조제2항”을 “제5조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위촉기간)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을 “단원의 해촉”으로 하고, 제10조제1항을 제10조 본문으로 하고, 본문 중 “단원과 사무직원”을 “단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예술단”을 “도립교향악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운영자문회”를 “운영자문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 중 “위촉회원”을 “위촉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“운영자문회”를 “운영자문위원회”로, “심의·의결”을 “자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예술단”을 “도립교향악단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예술단운영”을 “도립교향악단운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과 제8항 중 “운영자문회”를 “운영자문위원회”로 한다.

① 도립교향악단 운영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운영자문위원회(이하 “운영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하되,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, 문화여성환경국장으로 하며,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여성환경국장이 되고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과 제2항 중 “예술단”을 각각 “도립교향악단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운영자문회의”를 “운영자문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과 제2항 중 “예술단”을 각각 “도립교향악단”으로 한다.

제18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	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충청북도립예술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충청북도립교향악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구성) ① 충북도립예술단 (이하 “예술단”이라 한다)의 단장은 ----- (생략) ② 예술단에는 충청북도립챔버오케스트라와 사무국을 둔다. ③ 충북도립챔버오케스트라의 구성원 (이하 “단원”이라 한다)은 30명 이내, 사무국 직원은 2명 이내로 구성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2조(구성) ① 충청북도립교향악단 (이하 “도립교향악단”이라 한다)의 단장은 ----- (생략) ② 도립교향악단에는 교향악단과 사무국을 둔다. ③ 교향악단의 구성원 (이하 “단원”이라 한다)은 42명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제3조(단장 등의 직무)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며, 충청북도지사 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통할하고 단원과 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. ② (생략) ③ 예술감독겸 지휘자 (이하 “예술감독”이라 한다)는 공연기획, 공연지휘, 협연자 선정등 공연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	제3조(단장 등의 직무) ① 단장은 도립교향악단을 대표하며,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명을 받아 도립교향악단을 총괄하고 단원과 사무직원을 지휘감독 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 ③ 예술감독겸 지휘자 (이하 “예술감독”이라 한다)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의 기량연마와 연주를 지휘한다.

<p>④ (신설)</p> <p>제4조(단원의 구분) ① (생략) ② 상임단원은 <u>예술단의 일원</u>으로서 공연에 출연하는 상시근무자를 말한다. ③ (생략)</p> <p>제5조(자격과 위촉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<u>상임단원은</u> ----- (생략) ④ <u>비상임단원은 예술감독의 추천에 의하여</u> 도지사가 위촉한다. ⑤ <u>사무직원은 예술분야에 식견이 풍부하고 공연기획 능력이 있는자</u>를 도지사가 위촉한다.</p> <p>제6조(전형위원회) ① <u>상임단원의</u> ----- (생략) ②~③ (생략)</p> <p>제7조(<u>상임단원 전형방법</u>) ① 전형은 공개로 실시하되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및 경력평정으로 하며, 면접시험은 합격한 단원에 한하여 실시한다. 다만, 제5조제2항에 의한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할 수 있다.</p>	<p>④ <u>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며</u> 연주기획, 홍보, 마케팅, 단원관리, 서무 등 제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다.</p> <p>제4조(단원의 구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상임단원은 <u>도립교향악단의 일원</u>으로서 공연에 출연하는 상시근무자를 말한다.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자격과 위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은</u> ----- (생략) ④ 삭제 ⑤ 삭제</p> <p>제6조(전형위원회) ① <u>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의</u> ----- (생략) 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<u>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 전형방법</u>) ① 전형은 공개로 실시하되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및 경력평정으로 하며, 면접시험은 합격한 단원에 한하여 실시한다. 다만, 제5조제3항에 의한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할 수 있다.</p>
--	--

<p>② 공개전형 및 채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<u>의한다</u>.</p>	<p>② 공개전형 및 채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<u>따른다</u>.</p>
<p>제9조(위촉기간) ① <u>단원 및 사무직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.</u></p>	<p>제9조(위촉기간) <u>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.</u></p>
<p>② <u>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과 사무직원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.</u></p>	<p>② (삭제)</p>
<p>제10조(단원 등의 해촉) ① <u>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과 사무직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0조(단원의 해촉) <u>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
<p>1.~5. (생략) 6. <u>예술단의 활동을 거부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자</u> 7. (생략) 8. <u>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</u></p>	<p>1.~5. (현행과 같음) 6. <u>도립교향악단의 활동을 거부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자</u> 7. (현행과 같음) 8. <u>그 밖에 법령 등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</u></p>
<p>제11조(운영자문회) ① <u>예술단의 운영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립예술단운영자문회 (이하 "운영자문회"라한다)를 둔다.</u></p>	<p>제11조(운영자문위원회) ① <u>도립교향악단 운영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립교향악단운영자문위원회(이하 "운영자문위원회"라한다)를 둔다.</u></p>
<p>② <u>운영자문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하되 당연직과 위촉직 회원으로 구성한다.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p>	<p>② <u>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,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

<p>③ <u>당연직 회원은 문화여성환경국장과 예술감독으로 하며, 회장은 문화여성환경국장이 되고 부회장은 예술감독이 된다.</u></p>	<p>③ <u>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문화여성환경국장으로 하며,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여성환경국장이 된다.</u></p>
<p>④ <u>위촉회원은 -----(생략)</u></p>	<p>④ <u>위촉위원은 -----(생략)</u></p>
<p>⑤ <u>위촉회원은 -----(생략)</u></p>	<p>⑤ <u>위촉위원은 -----(생략)</u></p>
<p>⑥ <u>운영자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u></p>	<p>⑥ <u>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</u></p>
<p>1. <u>예술단 운영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</u></p>	<p>1. <u>도립교향악단 운영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</u></p>
<p>2. <u>예술단운영 기본계획</u></p>	<p>2. <u>도립교향악단운영 기본계획</u></p>
<p>3. (생략)</p>	<p>3. (생략)</p>
<p>4. <u>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p>	<p>4. <u>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p>
<p>⑦ <u>운영자문회 -----(생략)</u></p>	<p>⑦ <u>운영자문위원회 -----(생략)</u></p>
<p>⑧ <u>운영자문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된다.</u></p>	<p>⑧ <u>운영자문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된다.</u></p>
<p>제13조(예산지원 등) ① <u>예술단의 운영 -----(생략)</u></p>	<p>제13조(예산지원 등) ① <u>도립교향악단의 운영----- (생략)</u></p>
<p>② <u>도지사는 예술단으로 -----(생략)</u></p>	<p>② <u>도지사는 도립교향악단으로 -----(생략)</u></p>
<p>제14조(보수 및 실비보상) ① (생략)</p>	<p>제14조(보수 및 실비보상) ① <u>현행과 같음)</u></p>
<p>② <u>전형심사에 참석하는 위원 및 운영자문회의에 -----(생략)</u></p>	<p>② <u>전형심사에 참석하는 위원 및 운영자문위원회의에 -----(생략)</u></p>

<p>제15조(관람료 등) ① <u>예술단이 공연을</u> -----(생략) ② <u>예술단의 외부공연으로</u> -----생략)</p> <p>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15조(관람료 등) ① <u>도립교향악단이 공연을</u>----- (생략) ② <u>도립교향악단의 외부공연으로</u>----- (생략)</p> <p>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
---	--

관련법령 발취

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